

	<b>부처합동 (관세청·식약처)</b> <b>보도자료</b> <b>[1.14.(화) 12:00부터 보도 가능]</b>	배 포	2020. 1. 14.(화)
		담 당 과	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 관세청 조사총괄과
		과 장	최현철 (☎043-719-6251) 한창령 (☎042-481-7910)
		사 무 관 서 기 관	마정애 (☎043-719-6257) 염승열 (☎042-481-7818)

##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들어오던 밀수입자 무더기 적발 “안전성 입증되지 않아 구매도 섭취도 자제” 국민에 당부

□ 관세청(청장 노석환)은 세관 통관이 보류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휴대하고 몰래 들여오려던 밀수입자 17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등 통고처분\*하고 해당물품은 몰수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. 이들이 2019년 7월부터 12월 사이 들여오려던 캡슐은 63만정(시가 33억원 상당)에 이릅니다.

\* 관세법 위반 사실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검찰 고발 대신 벌금 상당액 등을 납부할 것을 세관장이 관세법 위반자에게 통보하는 행위.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달리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행정처분임

○ 이번에 적발된 사슴태반 캡슐제품(제품명 : PURTIER PLACENTA)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가 뉴질랜드 사슴태반으로부터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하여 항노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며 판매하는 제품입니다.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이의경)는 ‘사슴태반 줄기세포’가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에 등재돼 있지 않고 아직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

○ 이러한 이유로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원료로 한 캡슐제품(PURTIER PLACENTA)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통관 차단 및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바 있습니다.

\* 사슴태반 자체를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슴태반 중 특정 성분(줄기세포 등)을 분리·여과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함

□ 세관에서 통관을 보류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보내더라도 반입이 곤란해지자, 밀수입자들은 싱가포르 등지에서 제품을 직접 구입한 뒤 입국하면서 휴대용 가방 등에 은닉한 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는 밀수입을 시도하였습니다.

○ 특히, 이들은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한 준비물, 이동경로 등 행동수칙을 만들어 서로 공유하였고,

○ 세관에 적발되어 통고처분 받을 경우를 대비해 벌금 상당액을 털낼 목적으로 실제 구입가격보다 낮은 허위 가격자료도 미리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.

□ 싱가포르 R사는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전문적으로 다단계 판매하는 회사로 세계 각국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데,

○ R사에 회원 등록한 밀수입자들은 상당한 금액의 판매수당을 챙기기 위해 적발될 경우 벌금 상당액, 밀수품 몰수 등 손실을 감수하고 밀수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
□ 관세청은 R사의 국내 일부 회원들이 해당 제품에 대해 암, 고혈압, 당뇨 등 질병 치료에 효과 있다고 허위·과대 홍보를 하고 있으나,

○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만큼 국민들이 제품 구매는 물론,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,

○ 불법 식·의약품의 국내 반입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품, 국제우편, 특송화물 등에 대한 화물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, 식약처와 협업하여 불법 유통·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



케이스(앞면)



케이스(뒷면)



캡슐제품



캡슐제품(절단 시)